

대테러 인권보호관이 하는 일은?



인권보호 자문 개선사항 권고

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
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과 제도에 있어서
인권보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고
개선사항을 권고합니다.



인권 침해 관련 민원처리

대테러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
인권침해와 관련된 민원사건을 처리합니다.



관계기관 인권교육 등 인권보호활동 수행

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의
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등
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.



위원장 보고 후 인권침해 시정 권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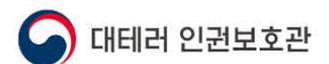
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
인권침해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이를
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,
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.



대테러 인권보호관

대테러 인권보호관

인권을 지키는
든든한 버팀목이
되겠습니다.



대테러 인권보호관

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7층
Tel. 02-739-8177 Fax. 02-739-8180

인권침해시 대응절차 및 처리방법



민원대상

대테러활동 중 기본권이나 인권이 침해되는
상황이 발생했을 경우
누구든지 대테러 인권보호관에게 민원을
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대테러 활동이란?

- 테러 관련 정보 수집
- 테러 위험인물 관리
-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
테러 수단의 안전 관리
- 인원 · 시설 장비의 보호
- 국제 행사 안전 확보
- 그 밖의 테러위험에 대응 및 무력진압 등
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



후속조치

법률구조 · 고발 등

민원인의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안내 · 고발이나
수사의뢰 · 당사자나 책임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
있습니다.



접수방법

민원접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
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에 우편, 팩스, 전자우편,
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우편 / 방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7층

전화 / Fax Tel. 02-739-8177 Fax 02-739-8180

이메일 terrominwon@korea.kr

국민신문고 www.epeople.go.kr



민원처리

신속처리 및 2개월 이내 결과통지

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
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.

관계기관에 시정 권고

민원 조사 결과,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가
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
대테러 인권보호관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
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.

테러방지법(「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」)은
테러로부터 **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**하고,
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.

국가테러대책위원회(위원장:국무총리)는
통합적인 **테러 대응체계를 구축**하고, 테러예방 및 대응에
필요한 **전담조직 구성**, 테러 예방을 위한 **안전대책 수립**,
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하는 **컨트론타워 역할**을
담당합니다.

대테러 인권보호관

테러방지법은
**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
기본권이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을 방지**
하기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고
있습니다.

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

대테러 인권보호관이
**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
행정적 · 재정적 지원**을 하기 위해 설치된
국가기관입니다.

